

-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

제 안 설 명 서

2025. 1.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청렴감사실]

제안 설명서

보고자: 청렴감사실장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고충민원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4년도 운영상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 1. 10. 위원 2명을 위촉하여 구성·운영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2명의 위원 중 1명을 2024. 1. 10. 자로 재위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위원회의 직무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조정·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지난해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운영상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건>

계	건축	건설	교통·주차	복지·문화	기후	청소	기타
19	7	2	2	2	1	1	4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4년도 운영상황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의 규정에 의해 달서구 의회에 운영상황을 보고 후 3월중으로 공표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고충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

의안 번호	0092 5004
----------	--------------

제출년월일 : 2025. 1. 23.
제출자 : 달서구청장
(청렴감사실장)

1.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정 전반의 투명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4년도 운영상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다.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3. 2024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3. 향후 추진일정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024년도 운영상황 공표: 2025. 3월 중

- 2024년도 -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1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1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3

제2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3

제3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1.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4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5
3. 2024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6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13

이 보고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달서구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처리·의견표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 1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도입취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정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2.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에 따라 고충민원의 합리적인 처리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되었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3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준용)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위원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할 수 없다.

1.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다. 위원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 달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현황

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2024. 12월말 기준)

직 위	성 명	위촉기간	자격요건 및 주요이력	비고
위 원	정진국	2024. 1. 10. ~ 2026. 1. 9. (1회 연임, 재위촉)	시민사회단체 추천 (매일신문사 국장 역임)	월, 수, 금

나. 근무장소: 청림감사실내(독립공간, 3평정도)

다. 운영방법: 주3일 근무(매주 월·수·금 근무)

라. 2024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활동수당: 편성 46,800천원 / 집행 24,300천원
- 운영경비: 편성 1,200천원 / 집행 783천원
- 집행잔액: 22,917천원 반납

제 2 장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등

1.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직무 및 의무

가. 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사표명,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평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조정·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나. 직무 제외사항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로 고충민원이 신청이 된 경우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직무로 보지 않는다.

1. 구의회에 관한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다. 비밀유지의 의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비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회의운영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 결정에 관한사항,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제 3 장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현황

1. 고충민원 조사·처리 등

가.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은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나. 고충민원의 조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 기관에 대하여 질문 및 현황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게 이첩할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다. 의견표명 및 의견제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와 조사가 완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사실 및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가. 분야별 고충민원 접수현황

<단위:건>

계	건축	건설	교통·주차	복지·문화	기후	청소	기타
19	7	2	2	2	1	1	4

나. 처리유형별 고충민원 현황

- 의견표명(9건), 제도개선(2), 이첩(4), 기각(4)

3. 2024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	2024. 1. 15.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따른 지속적인 불법 주차 단속 요청	○ 달서구 ◆◆로 소재 편도2차선 도로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와 중고오토바이, 폐지 수거 라이카 등 차도 적치물로 인한 교통 체증 유발로 주차단속 요청	○ 불법주차 단속 및 차도 적치물 정비 등 업무는 일반민원임으로 관련부서(주차관리과, 교통 행정과)로 이송 처리 [이 첩]	주 차 관 리 과 교 통 행 정 과
2	2024. 1. 17.	민원인이 거주 하는 아파트의 방 송 시스템 문제로 인한 관리감독 요청	○ ★★아파트 방송시스템 문제로 긴급 상황 발생시 사고 초래가 염려됨에 따라 관리 사무소 및 관련부서에 시정 요청	○ 화재 및 재난 등 발생시 대피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인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요청 [이 첩]	건 축 과
3	2024. 2. 26.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각종 조례의 개정 필요성 제기	○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됨에 따라 각종 조례 개정이 필요 ○ 「달서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달서아이 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시설 이용료 징수와 면제 조항의 다자녀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요청	○ 2023년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추진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 가정으로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견표명 [제도개선]	아 동 가 족 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4	2024. 3. 4.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 에 따른 각종 조례의 개정 필요성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각종 조례 개정이 필요 ○ 「달서구 달서별빛캠핑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설 이용료 다자녀 가정의 감면 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추진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 가정으로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견표명 【제도개선】 	문화 관광과
5	2024. 3. 7.	특정 상가 발딩에 입주한 병원의 야간 홍보용 LED 간판 조명으로 인하여 빌라 주민들의 빛공해 유발로 불편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배 ★★★타워에 입주한 병원의 야간 홍보 조명 LED 간판의 강렬한 불빛으로 인하여 맞은편에 거주하는 빌라 주민들의 수면 방해에 대한 민원으로 밤 11시 이후에는 야간 홍보 조명 간판의 작동 금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빛공해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과 관계자에게 해당 업체의 협조를 구하여 밤 11시 이후에는 야간 광도판을 소등 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줄 것을 의견표명 【의견표명】 	기후 환경과
6	2024. 3. 18.	보안등의 교체 및 보안등 관리자 안내판 수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동 ◆◆아파트 후문 보안등의 장기간 고장으로 야간 생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수차례 보안등 교체 요구 ○ 보안등 관리자 안내 전화번호도 구청 담당자가 아닌 동주민센터 연락처로 표기되어 있어 구청 담당 부서 번호로 안내판 수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민원 취지를 설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 보안등 수리와 관리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 【의견표명】 	건설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7	2024. 3. 22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사 용은 주민들의 사전동의 필요	○ 민원인 아파트의 공동 주택관리 지원사업중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신청과 지원금 사용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필요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사용은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사전 주민동의를 불필요하며, 입주자 대표 명의로 공고한 「CCTV 행위허가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내용 중 '미동의를 하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을 의견 표명 【의견표명】	건축과
8	2024. 4. 5.	국유재산 용도 폐지신청 불허 처분에 대한 불만	○ 민원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과호동 〇〇번지 외 2필지에 대해 용도 폐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처분에 대한 불만	○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는 행정기관의 장래 행정 목적으로의 활용가능성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 침해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해당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의거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용도폐지도 불가능함에 따라 기각 【기 각】	건설과
9	2024. 4. 8.	건축물 신축에 따라 도로의 건축선 확보 및 도로용도 유지	○ 건물 신축에 있어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는 건축 선을 확보하였으나, 반대쪽 토지는 건축선을 지키지 않아 주차장 진출입이 어려워 도로 확보 및 인근 토지 소유주 들이 공동 불법 사용에 따른 적치물 제거와 경계측량을 통한 도로 정비 요청	○ 신축 건물의 건축선 확보의 경우 건축법상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주변 도로는 과거 농로였지만 주변의 개발과 도심화로 도로로서 역할을 해왔던 만큼 공도를 침범한 사적 임의 사용 여부는 경계복원 측량 등을 통해 재산관리와 도로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공동로서 기능 회복에 힘쓸 것을 의견 표명 【의견표명】	건축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0	2024. 4. 15.	기존주택의 용도변경에 따른 새로운 주차장 확보 의무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	○ 40년이 넘는 2층 주택 중 1층을 제2종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하였고, 이후 1층의 남은 일부분을 식당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2023년 다시 주택으로 원상복구를 위해 용도변경 신청함에 있어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부당함에 대한 민원	○ 민원인의 당초 일차적인 용도 변경 신청은 일정 부분을 상가로 사용하여 불허 처분된 민원이지만 관련 건축물 대장 확인 결과 기존 건축물 확장이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 및 주차장법 검토 결과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에 용도변경 가능 의견표명 【의견표명】	건축과
11	2024. 5. 29.	공직자로서 일탈 행동 및 품위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 공직자 신분을 이용하여 공동주택과 관련한 인터넷 카페를 근무시간 중에 운영 하였으며 특정 시인에 대하여 논쟁중에 회원 개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일탈 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준수하여야 하며, 품위손상에 대한 조치는 관련법상에 의거 관련부서(청렴감사실)로 이첩 【이 첩】	건축과 · 청렴 감사실
12	2024. 7. 19.	금연숙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함	○ ▲▲초등학교 근처 공사현장 주변에 담배꽂초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친절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의견표명하고 민원인에게도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 및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통지 【의견표명】	건강 증진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3	2024. 7. 22.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인도불법 사용에 대한 주민불편	○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속 반복적인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불법영업에 철거 요청 및 인도 불법 점유로 통행 불편 초래	○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현재 공익에 심히 저해된다고 판단 되지 않아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 실시는 어려우며,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또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의견 표명 하였으며, 인도 불법 점유로 통행 불편 초래는 관련부서에 단속 및 행정지도 지속 실시 요청 【의견표명】	건축과 · 도 시 디자인과
14	2024. 8. 20.	성서국민체육센터 인근 대형 화물차 및 장기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 성서국민체육센터 인근 대형화물차 및 불법 장기주차로 사고 발생 위험이 따르고 성서 운동장 주변 대형화물차 등의 주차로 인한 매연,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차단속 요망	○ 불법주차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등 사전 계도 조치와 주차단속 CCTV설치 및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기 운행 정지 등 관련 근거 마련 등 관련부서에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의견표명】	주 차 관리과 · 교 통 행정과
15	2024. 8. 30.	성서산업단지 모다아울렛 주변 인도 및 주변 환경 정비 요청	○ 모다아울렛 인근 폐업한 호텔로 인해 상가 주변 인도상에 담배꽂초 및 쓰레기, 잡초 등으로 주변 상인과 방문객 들에게 불편함을 초래 하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필요	○ 해당 구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등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기 제한적이나 인도 등의 청결 의무는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관련부서(청소과)로 이첩 【이 첩】	청소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6	2024. 10. 28.	상세가족관계 증명서상의 등재내용 오류에 따른 정정 요청	○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오류가 있어 친생관계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삭제 정정되었으나, 상세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재되어 있기에 삭제 요청	○ 민원인과 무관한 자녀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어 내용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세가족 관계증명서상의 기재내용이 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기에 기각하였으며, 가정 법원에 소송도록 안내 【기 각】	중 합 민원과
17	2024.11. 1.	공동주택 자체 선거구 확장에 있어 법에 위반한 아파트 관리규약의 수정 요청	○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 다른 동의 세대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아파트관리규약 수정 요청	○ 다른 동의 세대와 혼합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민원인이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관리규약은 공동 주택관리법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보이며,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기에 기각 【기 각】	건축과
18	2024. 12. 26.	차량 압류처분 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압류 취소 요청	○ 차량 압류 처분 미통지 사항은 절차적 하자이므로 지방세 징수법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차량압류 처분 취소 요청	○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사실을 미통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을지라도 체납독촉장을 수령하고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 압류 등록을 촉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압류 등록을 완료한 사실, 압류통지가 체납에 대한 시후 절차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기각 【기 각】	징수과

연번	접수일자	민원제목	민원내용	처리결과	관련부서
19	2024. 11. 29.	공장건물의 외벽 리모델링 공사에 의한 취득세 부과 부당	○ 공장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와 리모델링 공사시 의무 신고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신고한 전동지게차 지방세 부과 부당	○ 「지방세법」, 「건축법」 등의 규정사항을 봤을 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사항과 공정성 및 합리성을 위반하여 과세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세무조사 기간(2020.~2023년)을 벗어나 취득(2019. 12. 31.)한 지게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을 의견표명 【의견표명】	세무과

4.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

①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별빛캠핑장 이용료 감면 등 반영 요구

□ 민원내용

- ▶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감에 2024년부터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4년부터 양육비지원, 문화시설 이용 등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달서구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함.
- ▶ 특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각종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다자녀 지원의 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사실관계 확인

-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에서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감면 등의 규정이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달서구 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카드 소지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음.

□ 의견표명

- ▶ 2023년도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정책과제 추진 방향에 맞춰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혜택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에 맞춰 각종 법률 및 지자체 조례 등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현재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하는 조례 개정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표명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구청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부칙 개정안을 '24. 7. 11.일 공포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별빛캠핑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외 4건에 대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음.

□ 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관련)
2. 우선공급
다.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 부과중인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요청 등

□ 민원내용

- ▶ ◇◇빌딩은 2003년도에 건축한 6층 규모의 상가 빌딩으로 건물 좌측에 꽃가게 및 옷가게가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음.

- ▶ 이에 민원인은 2023년도에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의심되어 관련부서(건축과)에 신고 하였으나,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없는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철거를 요청함.
- ▶ 또한, 꽃가게에서 꽃을 판매하기 위해 인도를 임의적으로 불법 점유하여 화분 등을 전시하고 있어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

□ 사실관계 확인

- ▶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빌딩은 준주거 지역에 건축된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빌딩으로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근린생활 시설이 주 용도인 집합건축물임.
- ▶ 해당 빌딩의 건축물대장상 부속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꽃가게 및 옷가게로 운영되고 있는 가건물은 2013년 2월 달서구청 건축과에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 2013년 7월부터 각 23회에 걸쳐 약 57,000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것으로 확인됨.
- ▶ 또한, 꽃가게에서 꽃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도 일부를 불법 점유하여 화분등을 전시하고 있는 관계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 의견표명

- ▶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건축·시설물에 대하여 재량권을 갖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행정대집행의 경우 재산권 및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함.
- ▶ 위의 내용과 관련한 무허가건축물이 현재 지역주민들의 공익에 심히 저해 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의 실시는 쉽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는바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다만, 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상행위를 하고있는 것이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 필요할 것으로 의견표명 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달서구청(건축과)에서는 시정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부서(도시디자인과)에서도 주민통행 불편 방지를 위해 해당구역의 단속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행정대집행법」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장 건물 외벽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취득세 부과 부당

□ 민원내용

- ▶ 민원인은 ◇◇법인 대표로서 2021년 12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서공단 내 공장을 인수하여 외부 리모델링 공사(2021. 12월)를 실시하였음.
- ▶ 달서구청 세무과에서는 과세기간(2020.~2023년) 내 지방세 세무조사(2024. 10. 15.~11. 18.)를 실시하였고, 해당 법인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3,656천원 가량을 부과하였으나, 민원인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에 대해 무지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 신고 및 세금부과에 대해 알지 못하여 세금 감면 등 선처를 요구하였음.

□ 사실관계 확인

- ▶ 민원인은 법인의 영업 소재지를 중구 남산동에 두고 2021년 12월부터 새로 인수한 공장에 생산현장을 두고 있음.
- ▶ 또한, 새로 인수한 공장이 낡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바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및 리모델링 공사시 신고사항 등을 인지하지 못한채 운영하였으며, 건물의 대수선 부분이 취득세 대상인지도 알지못함.
- ▶ 세무과에서는 2024년 9월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2020.~2023년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수선 부분(2,980천원) 및 전동지게차 취득물(2건, 676천원)에 대한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였음.

□ 의견표명

- ▶ 달서구청(세무과)이 조세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 및 합법성과 합리성을 위반하여 과세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세무 조사기간(2020.~2023년)을 벗어난 취득물(2019. 12. 31.신고)의 취득세(260천원) 부과의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부서 조치내역)

-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미신고된 산업용운반기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타당하며, 2024. 11. 28. 법인 소재지인 중구에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고 민원인은 2024. 12. 17. 취득세를 전액(3,656천원) 납부하였음.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